

노동현장의

# 안전보건

2006 / August

8

CONTENTS

- 산업안전보건 동향 / 2
- 카프로공장 가동 문제없나 - 현장지식 없는 관리적 공장가동 계획 / 4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 6
- 노동자 통근재해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 7





# 산업안전보건 동향



## 업무상 재해 출퇴근, 회식중 사고 폭넓게 인정

유족보상금과 요양급여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 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해지는 추세다. 법원은 최근 가스충전소 직원이 회사 휴게실에서 역기를 들다 사망한 사건과 유류배달원이 주유 차량을 몰고 지인을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모두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통근재해에 대한 법원의 시각도 180도 바뀌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공무원 외에는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퇴근 중의 노동자는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통근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회사원 박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음주였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면사무소 직원이 지역 주민과 음주 중 평상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육군 모 부대소속 소령이 송년회식 직후 택시를 잡으려다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 광고대행사 직원이 접대를 위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뇌출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간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노조원에게 폭행당하는 등 노조활동 중 부상은 산재로 인정하지만 불법적인 파업이나 집회에서 다친 경우 법원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장애노동자 산재시 장애등급 상향조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애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장애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모씨는 2급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수화로 의사소통을 해왔다. 근무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 손이 끼어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재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손가락 2개를 잃었을 경우 산재기준을 적용해 제10급제7호의 장애등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충처리위는 김씨의 장애등급을 제6급제2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김씨는 산재로 인해 오른쪽 손가락 기능이 상실돼 종전의 수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 비장애인과 같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장애등급을 제6급제2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 알바 청소년 약10% 직업병

미 Wake Forest 대학 가정의학과 Zierold박사팀이 6,810명의 10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514명이 그들의 직업과 연관된 부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미국내에서 매년 70명이 아이들이 직업현장에서 사망하며 수백명의 아이들이 입원을 하고 또한 수만명의 아이들이 응급실에 실려 온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현장에서의 부상이 10-19세 청소년들 사망의 네 번째 사인으로 나타났다.

Zierold 박사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방과후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므로 학교 보건 교과과정 중에 직업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사는 이와 같은 교과과정 안에 위험구역으로 부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및 직업현장에서의 자신들의 권리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집회 중 돌 맞아 다친 조합원 산재 인정

지난해 11월 농민집회에 참석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농협노조 배모 조합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농협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그동안 사측이 농민집회 참석을 지원해 왔다"며 "공단은 배씨의 집회 참석을 '출장 업무'로 보고,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노조 전임자 노조 활동중 사고 산재

울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는 9일 00자동차 노조 전 기획실장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하던 업무 대신 노조 업무를 전임한 것이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그 노조업무가 회사와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 관련 활동 또는 불법 노조활동, 쟁의단계 이후의 활동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조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노조가 주최한 수련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업무와 관계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더욱 쉬워질 듯

**- 8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

앞으로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카프로공장 가동 문제 없나

- 현장지식 없는 관리직 공장가동 계획 -

카프로 노동조합 위원장 황 대 봉

(주) 카프로는 1974년 설립되었으며 연간 약 24만 톤의 카프로락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카프로락탐은 원유로부터 얻어지는 사이크로헥산, 벤젠, 톨루엔, 납사, 암모니아, 수소 및 유허 등을 원료로 하여 고온, 고압의 복잡한 반응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의류등의 나일론섬유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의 제조에 쓰이는 나일론수지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감소22%, 기구개편, 전환배치, 임금동결, 상여금반납, 휴가반납 등 엄청난 희생으로 2.6배 생산을 배가시키면서 자구노력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0.08%가 보여주듯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일류기업 만들기에는 관심이 없는 효성과 코오롱 등 대주주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주식배당금 결정, 과장이상 비조합원 직책수당 평균 26만7천 원을 기습인상하면서도 경영상태를 변명으로 조합원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적자경영을 책임조차 지지 않는 경영진에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어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을 통한 세계일류기업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1974년 6월 1일 영국 플릭스보루 카프로락탐 폭발사고로 공장 전체 파괴. 현장 부근 조정실 노동자 전원 사망, 인근주민 수백여 명이 중경상. 주중에 일어났을 경우 500명이상 사망 추정됨. 다이너마이트 15톤 이상의 폭발과 맞먹으며, 사고현장에서는 폭발뒤 화재로 10일 이상 지속. 당시 사고공장은 연간 5만톤 규모.


8월3일 총파업돌입이후 회사는 단한차례 교섭만으로 8월12일 공격적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하여 전체 조합원 320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공장 조업 시 필수적인 안전관리 법정선임요원들이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위장부분 직장폐쇄 신고 후 공장운전에 관한 경험과 현장지식도 없는 관리직 80명이 3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대형화학공장은 화학반응에 의한 연속적인 공정이므로 일반조립과 같이 공장을 일시에 정지하고 가동할 수 없으며, 정상가동 중 조그마한 실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장의 안전과 관련한 조정실 운전요원과 현장 운전요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정을 이해하고 화재, 폭발, 전 공장의 모든 세심한 부분을 항상 주시하고 파악하여야 하는 등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화학공장의 대형 참사사고는 가동절차와 안전작업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가동과 판단착오로 인한 실수 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사고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프로는 안전문제보다는 공장을 가동하여 대주주사인 효성, 코오롱등에 원료공급에만 혈안이 되어, 비전문적이고 비숙련된 인원으로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12시간에서 16시간이상 휴식과 퇴근조차 일정하지 않은 근무로 피로의 가중과 판단착오로 인한 오작동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등 중대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상시 대처능력조차 전무한 비전문가들의 공장가동은 수십개 화학공장이 밀집된 공단의 특성상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져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주민과 울산시에 엄청난 재앙과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부적합한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울산시와 관계당국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며, 수십개의 화학공장이 밀집된 울산화학공단에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져 국가에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 질안전 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안전위생국(OSHA) 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여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2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미처 유해성이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로 유통되고 있어 취급노동자에게 직업병, 폭발·화재, 맹독성물질에 대한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MSDS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누출·폭발·화재사고시 대처방법, 취급·저장방법, 안정성·반응성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서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유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듯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이다

이러한 MSDS는 화학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재판매 할 때도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MSDS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잘 볼 수 있게 게시, 경고표지를 부착 및 적절한 교육 실시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새롭게 개발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MSDS상에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보완, 갱신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에 비치된 MSDS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검진시 그 담당자가 MSDS를 살펴봄으로써 유해 물질을 파악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병 발생시 원인물질 추적으로 직업병 관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충분히 취급요령과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자 통근재해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공인노무사 김승치(하나로노무법인)


**서** 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판사)는 지난 6월 15일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행위로 통근재해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개념상 통근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 박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노동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노동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는데 바로 이점이 과거 통근재해를 인정한 판례의 내용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씨는

2005.2.2 오후 9시경 야간근무를 위해 동료 정씨를 회사의 카풀권장책의 일환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 중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여 동승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운전자인 박씨는 허리와 어깨,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과거 노동자의 통근재해에 대해 법원의 대체적인 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5조 제4항)의 내용,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의 사고이어야 하고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에 전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간혹 통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기사화가 될 정도로 희귀한 현상인데 법원에서 인정된 과거 사례의 특징은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다거나((대판2002두10124, 대판2005두4458),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서울행판 2000구31409) 등으로 특별하거나 평소와 다른 출근시간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었다.

외국의 경우는 노동자의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 범주에 포함하여 입법하고 있는 경우(대표적으로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와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범주에서 보호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일본·영국·미국)로 볼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권고(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를 통해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 하거나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외국의 이러한 사례는 노동자의 통근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적어도 통근재해는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도 통근재해자들은 “내가 일하러 가다가 사고 났지, 놀러가다가 사고 났냐? 공무원의 통근재해는 공무상 재해가 되고 노동자는 안 되고,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뭐냐?”라며 하소연 하고 있고, 어쩌다 법원에서 인정된 통근재해자는 “1,2심 모두 승소하였는데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 약 4년이 지나, 가정은 품비박산 났는데 공단은 손해 본 것 없이(지연이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4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라며 하소연을 한다.

과연 이번의 판결이 향후 통근재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일이다. 



뇌심혈관계질환예방프로그램 실시

현장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별 건강위험지수 제시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서울시청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산 산재예방캠페인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8월 23일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 정문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마산수출자유지역내 노동조합 위원장과 산안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시한인 8월말을 넘기고 2차 논의 진행중. 8월말 노사안에 대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기초로 9월 한 달간 2차 노사정 조율 및 합의에 들어 간다.

8월 30일 ~ 9월 1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외기노련 주한미국 노조간부의 산업안전, 산재실무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외기노련 주한미국인노동조합 산업안전교육